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안

(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871
----------	-------

발의연월일 : 2025. 7. 31.

발 의 자 : 이학영 · 임호선 · 한정애
이용선 · 곽상언 · 송옥주
김문수 · 박지원 · 김영호
김영환 · 양문석 · 박수현
이재관 · 신정훈 · 김성희
추미애 · 장경태 · 서영교
정진욱 · 박찬대 · 한민수
허영 · 송기현 · 문정복
이건태 · 이원택 · 김용민
김윤 · 민병덕 · 김상욱
안호영 · 황운하 · 이훈기
박성준 · 강준현 · 유동수
김선민 · 최민희 · 양부남
조인철 · 전진숙 · 박균택
민형배 · 안도걸 · 김영배
정준호 · 김주영 · 김종민
이정문 · 천준호 · 김현정
용혜인 · 김교홍 · 이개호
이인영 · 이강일 · 신장식
김남근 · 박범계 의원
(59인)

제안이유

1980년 서울의 봄, 1987년 6월 항쟁 등 1980년대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이 있었기에 민주헌정질서를 회복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킬 수 있었음. 특히, 1984년 5월 설립되어 민주화운동의 구심점이 된 민주화추진협의회는 현재의 민주헌정질서를 확립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맡았다고 여겨짐.

그러나 현재 민주화추진협의회가 민주화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을 추진·유지하는 데 필요한 근거가 부족하여 단체가 지니고 있는 민주화 이념과 물질적·정신적 자산을 유지·보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주도하였던 민주화추진협의회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의 설립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시키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를 설립하여 민주화운동에 공헌한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국민에게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시키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

고,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며,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3조).

다. 단체의 정관에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

라. 단체의 사업으로 회원의 의료·간병지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그 사업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등을 규정함(안 제5조).

마. 단체에 임원으로 회장 2명, 부회장 2명, 이사 20명 및 감사 2명을 두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국가보훈부장관은 단체가 법률에 위반하거나 설립목적에 맞지 아니하게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또는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른 지시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에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사. 단체는 정관으로 정하는 해산 사유의 발생 또는 총회의 해산 결의로 해산하도록 함(안 제18조).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를 설립하여 민주화운동에 공헌한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국민에게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시키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화운동”이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1980년대의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2. “민주화추진협의회”란 민주헌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1980년대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는 조직들의 연대를 기반으로 1984년 5월 18일 결성된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법인격 등) ①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단체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그 본부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정관) ① 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본부 및 지부의 명칭·조직에 관한 사항
7. 회원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
8.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9. 회비 및 자산에 관한 사항
10. 회칙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② 단체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사업)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의 건강·복지를 위한 의료·간병 지원
2. 회원의 장례 지원
3. 민주화추진협의회가 행한 민주화운동에 관한 기념사업
4. 민주화추진협의회가 계승하는 민주화운동 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

사업

5. 그 밖에 단체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수행을 위한 수익사업과 부대사업

제6조(회원의 자격) 단체의 회원은 단체의 설립목적과 사업에 동의하는 사람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제7조(조직) ① 단체에 본부 및 지부를 둘 수 있다.

②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지부는 서울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둘 수 있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회원의 수 및 지리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도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부를 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단체에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제8조(임원) ① 단체의 본부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2명

2. 부회장 2명

3. 이사 20명

4. 감사 2명

② 단체에 사무총장 1명을 둔다.

③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④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 ⑤ 회장은 단체를 대표하고 단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⑦ 감사(監事)는 단체의 회계와 회계에 관련된 업무를 감사(監査)한다.
- ⑧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단체의 업무를 처리한다.
- ⑨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및 사무총장은 회원이어야 한다.
- ⑩ 임원 중 상임인 임원은 5명 이내로 하되, 상임으로 하는 임원의 대상과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지부장) ① 단체의 지부에 지부장 각 1명을 두며, 그 선임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지부장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제11조(총회) ① 단체의 총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사무총장, 지부장 및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의 소집, 의결사항 및 회의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대의원) 단체의 대의원의 정수(定數) 및 선임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총회의 소집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비치 서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회원 명부
2. 재정(財政)에 관한 장부와 서류
3. 회의록

제15조(시정조치) 국가보훈부장관은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법률을 위반하거나 설립목적에 맞지 아니하게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2.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른 지시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제16조(행정관청의 검사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단체의 회계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7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국가보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단체에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해산 사유)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하는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해산 결의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단체가 아닌 자는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0조(과태료) ① 제19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단체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설립준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설립준비위원회는 단체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설립준비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단체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④ 설립 당시의 단체의 회장은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설립준비위원회에서 선출하되,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설립준비위원회는 단체의 회장이 선출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⑥ 설립준비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5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산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⑦ 단체의 설립준비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